



NEVADA SECRETARY OF STATE

유권자 주소와 전화번호 공개 유보 요청 (Request to Withhold Address & Telephone Number from the Public)

네바다주 수정법(NRS) 293.558 에 의거 등록유권자는 거주지 카운티 클럭이나 유권자등록처에 서신으로 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공개를 유보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접수한 해당 카운티 클럭이나 유권자등록처는 요청 유권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은 1) 카운티 클럭이나 유권자등록처에 접수된 문의에 대한 응답 내용, 2) 네바다주 수정법 293.301, 293.440, 293C.290 과 293C.542 규정에 따른 대중검색을 위한 등록유권자 명단에 삽입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등록유권자의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이메일주소 또는 신분증번호 등은 자동적으로 일반공개가 유보되지만 전화번호와 주소는 반드시 등록유권자가 법(NRS 293.558) 규정에 따라 요청을 하여야 유보된다는 사실입니다. **등록유권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번호 이외의 자료는 공개될 수도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운티 클럭 연락처 자료](#)
